

「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5년 10월 2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5년 10월 2일

라. 상정일자: 2025년 10월 16일

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환경교통국장 김 태 영

### 나. 제안이유

- 장애인, 노약자,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「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」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·운영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다. 주요내용

○ 위탁사무: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·운영

○ 추진근거

-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16조

- 「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 제9조
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5조

○ 필요성

- 특별교통수단(장애인콜밴)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, 노약자,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복지업무의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요하여 민간위탁 추진으로 운영의 효율성, 전문성 확보

○ 위탁개요

1) 위탁사무: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·운영

-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(임산부택시 포함) 이용대상자 등록신청 접수, 자격심사 및 확인

-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

-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및 수입금 관리

- 이동지원센터 직원 및 운전원 채용, 교육 및 근로감독

-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

2) 위탁시설: 특별교통수단 29대(휠체어 슬로프 장착 차량)

- 카니발 29대

## <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>

- ◇ 수탁기관: (사)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북협회(총괄부장1, 사무원2, 운전원26)
- ◇ 이용대상: 장애정도가 심한 보행상장애인,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, 임산부,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
- ◇ 이용요금: (관내) 기본 1,100원/5km, 최대요금 3,000원  
(관외) 기본 1,100원/5km, 최대요금 시외버스 요금 2배 이하
- ◇ 이용방법: 즉시콜 및 예약콜(3일전) 병행
- ◇ 이용지역: 관내 또는 경북·대구, 김천KTX역(병원진료 목적)
- ◇ 이용차량: 특별교통수단 25대(2025년 하반기 4대 증차 예정)

○ 위탁기간: 2026년 4월 ~ 2029년 3월(3년)

○ 소요예산: 2,137백만원 \* 2026년 기준

[단위: 백만원]

계	인건비	운영비 등
2,137	1,701	436

※ 2026년 위탁비 기준(대당 연 74백만원 정도)

○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,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·선정

○ 적정성 검토결과: 적정 ※ 2025년 제3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

### 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16조
- 「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 제9조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. 제5조

○ 예산조치: 2026년도 예산편성

#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#### ○ 본 동의안은

-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·운영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#### ○ 검토 결과,

-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등록 교통약자 규모와 이용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시간대별 운영 횟수 확대, 단계적 증차, 대체수단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아울러, 특별교통수단이 교통약자와 장애인이 주 이용대상인 만큼 운전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안전교육 강화를 병행하고,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과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성과 편의 제공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